

파주시의회위원회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7. 4. 17.

발 의 자 : 차익준의원외 3명

☐ 제안이유

파주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서 주민의 자율적 참여의식 함양을 통한 자치역량을 제고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주민과 언론기관에 발표할 수 있다. (안 제10조 2항)

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운영위원장은 다음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주민과 언론기관에 발표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거 의결된 주요사항
2. 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
3.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주요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(생략) (신 설)	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(현행과 같음) ②운영위원장은 다음 주요의정 활동 사항을 주민과 언론기관 에 발표할수 있다. 1.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거 의결된 주요사항 2. 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 3.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주요 사항	